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6845
----------	-------

제안연월일 : 2026. 2.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연 번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상정	소위 심사
1	10390	정진욱의원 등 34인	2025.05.07.	상정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05.14.)
				소위 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2.11.)
2	10414	민형배의원 등 11인	2025.05.08.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6.01.20.)
				소위 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2.11.)
3	10437	윤준병의원 등 12인	2025.05.09.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6.01.20.)
				소위 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2.11.)
4	11538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5. 07. 17.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6.01.20.)
				소위 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2.11.)
5	12105	한창민의원 등 12인	2025.08.11.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6.02.10.)
				소위 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2.11.)
6	13358	전종덕의원 등 11인	2025.09.29.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6.02.10.)
				소위 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2.11.)
7	13648	김기표의원 등 10인	2025.10.20.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6.01.20.)
				소위 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2.11.)

연 번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상정	소위 심사
8	13900	김용민의원 등 12인	2025.11.04.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5.11.11.)
				소위 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2.11.)
9	14036	이해민의원 등 10인	2025.11.07.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6.01.20.)
				소위 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2.11.)

가. 제432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2. 11.)는 이상 9건의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나. 제432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6. 2. 11.)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결과를 받아들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헌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사법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의 심급제도로 구제받기 어려운 재판절차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

해 등은 헌법소원을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도 확정된 재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재판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및 제3항).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함(안 제69조제1항).

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심판청구서에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71조제4항 신설).

라.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의2

신설).

마. 지정재판부는 제68조제3항에 따른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3항제4호).

바.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함(안 제75조제4항 신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제69조제1항 단서 중 “한다”를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

하여야 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가처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2조제3항제1호 중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를 “아니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8조제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73조제2항제2호 중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는”을 “제68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해당 재판의 당사자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로 한다.

제7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해당 재판을 취소한다. 이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u>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u>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u><신설></u></p>	<p>제68조(청구 사유) ① ----- ----- ----- -----<u>헌법재판소</u>-----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u></p> <p>1. <u>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u></p> <p>2. <u>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u></p>

제72조(사전심사) ①·② (생략)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3. (생략)

<신설>

4. (생략)

④ ~ ⑥ (생략)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① (생략)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2조(사전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아니하고-----

2.·3. (현행과 같음)

4. 제68조제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이 제72조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

제75조(인용결정) ① ~ ③ (생략)

<신설>

④·⑤ (생략)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

② -----

-----.

1. (현행과 같음)

2. 제68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해당 재판의 당사자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제75조(인용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경우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해당 재판을 취소한다. 이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⑦ 제6항-----

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
를 준용한다.

⑦ (생략)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
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
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
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제8항-----

-----.